

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건설  
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0 월 31 일

여 수 시 장

2023/10/31



여수시 조례 제1981호

붙임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차량을 우선 사용토록” 을 “지역 건설업체를 사용하도록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인·허가시” 를 “인가·허가시” 로, “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” 을 “법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인·허가시 지역건설업체” 를 “인가·허가시 지역건설업체” 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각호” 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의 각 호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수립 제공” 을 “수립·제공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2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” 를 “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해당업무 담당국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

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.)

가.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

나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다. 지역건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

라.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마.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2조 본문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직무 를”을 “직무를”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이라도”를 “중이라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질병, 기타 사유로”를 “질병 또는 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회의의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관련 한”을 “관련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의하고”를 “개의(開議)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관련 업무 팀장”을 “해당업무 담당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6조 중 “법위 안에서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”를 “법위에서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서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 략) 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, 또한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<u>등록 차량을 우선 사용하도록</u> 노력한다. 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인·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, <u>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</u>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산업체에 70%이상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역 건설</u> <u>산업체를 사용하도록</u> ----- -----  ⑤ ----- <u>인</u> <u>가·허가시</u> ----- -- <u>법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
제5조(이행상황 점검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 1. · 2. (생 략)  3. 지역의 민간사업 <u>인·허가시 지역건설업체</u> 참여에 관한 사항  4. · 5. (생 략)	제5조(이행상황 점검)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분할발주 등)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실시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·시행한다.	제6조(분할발주 등) ----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의 각 호----- ----- ----- -----.
제8조(포상 및 인센티브) ① (생 략)	제8조(포상 및 인센티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제를 수립 제공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.

### 1. · 2. (생 략)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해당 관련 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 소속 5급 이상 관련 공무원
2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3. 지역건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
4.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
5.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과 경험이 풍부한 자

### 〈신 설〉

② -----  
-----  
- 수립 · 제공-----.

③ ----- 제2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.

###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 
----- 1명을 포함한 1  
1명 이내-----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해당업무 담당국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.)

가.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

나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

다. 지역건설 노동조합에서 추

천하는 사람  
라.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  
천하는 사람  
마.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  
여 학식과 경험과 경험이 풍  
부한 사람

제12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 
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 
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 
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 략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 
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 
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 
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 
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 
수 있다.

1. (생 략)
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  
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  
기 어려울 때

3. 그 밖의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  
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 
할 때

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  
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 
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  
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
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(임기) -----  
----- 한 차례만 -----  
-----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 
같음)

② -----  
-----  
직무를 -----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-----  
-----  
중이라도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질병  
또는 그 밖의 -----  
-----

3. -- 밖에 -----  
-----

제15조(회의의 운영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다  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경우에 -----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 
을 요구하는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경우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.

#### ⑤ (생략)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-----  
----- 관련한 -----  
-----.  
-----.

③ -----  
----- 개의(開議)하고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 1명----- 해당업무  
담당부서의 장-----  
-----.

####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수당 등) -----  
----- 범위에서  
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 
영 조례」에서 -----  
-----.